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승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963

발의연월일: 2022. 10. 27.

발 의 자: 김승남 · 김홍걸 · 주철현

이용빈 · 위성곤 · 서동용

최종윤 • 이원택 • 민병덕

안호영 · 김민철 · 신정훈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안전관리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 규정이 강화·신설되었으나, 이와 관련하여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시기와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이 있는 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시기 등이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의무자가 쉽게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선임의무 및 선임시점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(안 법률 제18702호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2).

법률 제 호

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8702호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6조의2제1항 중 "위하여 제61조의2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"를 "위하여"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는 제61조의2에 따른 선박안전 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.

부칙 제1조 단서 중 "제46조의2제1항"을 "제46조의2제1항 후단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혂 개 정 아 법률 제18702호 해사안전법 법률 제18702호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2(선박소유자의 안전관 제46조의2(선박소유자의 안전관 리책임자 선임의무 등) ① ---리책임자 선임의무 등) ① 제4 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 를 수립 · 시행하여야 하는 선박 소유자(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. 이하 제2항 및 제3항에 서 같다)는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61조의2에 따른 선박 안전관리사 자격을 가진 자 중 에서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 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 <후단 신설> 우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 자는 제61조의2에 따른 선박안 전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에서 선임하여야 한다. ② ~ ⑥ (생 략) ② ~ ⑥ (현행과 같음) 부칙 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 제1조(시행일) ----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다만, <u>제46조의2제1항</u> 및 제61	<u>제46조의2제1항 후단</u> -
조의2부터 제61조의6까지의 개	
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	
날부터 시행한다.	